

재 무 부

우 420 - 760 / 경기 과천 중앙 1 / 전화 (02) 500 - 5326 / 전송 503 - 9324

문서번호 재용 22110-174

시행일자 1992. 7.17.

수신 외무부장관

참조 영사교민국장

취급		장 관
보존		
차 관		
국 장	선철	
과 장	경국	
기안	권혁세 권	
		협조

제목 재해관련 금융지원내용 통보

1. 외무부 재일 20800-445호('92.6.24)와 관련입니다.

2. 재해발생시 당부에서는 풍수해대책법령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정한 『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』에 추가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바 금융 및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재해는 풍수해대책법 제2조에서 정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지금까지 주로 수해발생시에만 지원하여 왔으며 금융지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지원자금의 종류

(1) 시설복구자금

- 지원범위 : 파손된 건물, 기계장치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금
- 지원기간 : 2년 범위내에서 지원은행이 결정

(2) 긴급 운영자금

- 지원범위 : 임금체불분, 유실원자재 구매등에 따른 자금소요액
- 지원기간 : 생산판매가 정상화될때까지